##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기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1582

발의연월일: 2023. 4. 24.

발 의 자:한기호·김영선·김희곤

엄태영 · 이헌승 · 하태경

최영희 · 최춘식 · 노용호

유의동 · 김도읍 의원

(11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행위, 병역판정검사 등을 대리하는 행위에 대하여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한 행정사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병역의무를 면하게 할 목적으로 글을 게시하고 상담하여 병역면탈을 실행하도록 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현행법상 이러한 병역면탈 행위를 조장하는 정보를 유통하거나 병역면탈 행위를 교사 또는 방조하는 행위 등에 관한 처벌 규정은 미비함.

이에 정보통신망에 병역의무 기피·면탈 행위를 조장하는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이에 대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병역의무 기피·면탈 행위를 교사 또 는 방조한 사람에 대하여도 정범(正犯)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여 병역의무 기피·면탈 조장 행위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1조의3, 제87조의2 및 제94조의2 신설).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1조의3(병역의무 기피·면탈 정보의 유통금지) 누구든지 「정보통신 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86조 및 제87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조장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7조의2 및 제94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7조의2(병역의무 기피·면탈 정보의 유통금지의무 위반) 제81조의3을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4조의2(교사범 등) 제86조 및 제87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교사하거 나 방조한 사람은 정범(正犯)에 준하여 처벌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lt;신 설&gt;</u>	제81조의3(병역의무 기피·면탈 정
	보의 유통금지) 누구든지 「정
	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
	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
	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
	여 제86조 및 제87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조장하는 정
	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u>&lt;신 설&gt;</u>	제87조의2(병역의무 기피·면탈 정
	보의 유통금지의무 위반) 제81
	조의3을 위반한 사람은 2년 이
	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u>&lt;신 설&gt;</u>	제94조의2(교사범 등) 제86조 및
	제87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교
	사하거나 방조한 사람은 정범
	(正犯)에 준하여 처벌한다.